第288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査小委員會)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3月24日(水)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1.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
142.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
143.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44.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審査된案件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계속) ····· 8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계속) ····· 8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계속) ····· 8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계속) ····· 8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3)(계속) ····· 8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5)(계속) ····· 8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계속) ····· 8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계속) ····· 8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7)(계속) ····· 8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계속) ····· 8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계속) ····· 8

20.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계속) ····· 8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3)(계속) ····· 8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계속) ····· 8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649)(계속) ····· 8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 ····· 8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68)(계속) ····· 8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0)(계속) ····· 8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계속) ····· 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6)(계속) ····· 8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6)(계속) ····· 9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10)(계속) ····· 9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4)(계속) ····· 9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발의)(계속) ····· 9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9)(계속) ····· 9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6)(계속) ····· 9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8)(계속) ····· 9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4)(계속) ····· 9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4)(계속) ····· 9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9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33)(계속) ····· 9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5)(계속) ····· 9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9)(계속) ····· 9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70)(계속) ····· 9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81)(계속) ····· 9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9)(계속) ····· 9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62)(계속) ····· 9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7)(계속) ····· 9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5)(계속) ····· 9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2)(계속) ····· 9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 ····· 10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발의)(계속) ····· 10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08)(계속) ····· 10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 10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9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9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9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9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 10
10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본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0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0)(계속) ···· 10
10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34)(계속) ···· 10
11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1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2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 10
1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54)(계속) ····· 10
1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9)(계속) ····· 10
1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1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 11
1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 11
1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 11
1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발의)(계속) ····· 11
13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3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141.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 11
142.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 11
143.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 11
144.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 11

(14시27분 개의)

○소위원장 김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국회 관계 법안은 기존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국회 관련 법 136건과 의장이 제시한 국회 관계 법 개정의견 4건, 지난 2월 24일에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률안 4건 등 모두 144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2월 국회에서 심사한 방법과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국회 관련 법률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계속)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계속)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계속)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계속)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3)(계속)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5)(계속)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계속)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계속)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7)(계속)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계속)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계속)
20.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계속)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3)(계속)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계속)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649)(계속)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68)(계속)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0)(계속)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계속)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6)(계속)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6)(계속)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10)(계속)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4)(계속)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발의)(계속)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9)(계속)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6)(계속)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8)(계속)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4)(계속)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4)(계속)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33)(계속)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5)(계속)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9)(계속)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70)(계속)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81)(계속)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9)(계속)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62)(계속)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7)(계속)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5)(계속)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22)(계속)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발의)(계속)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08)(계속)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10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본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0)(계속)
10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34)(계속)
11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1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1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1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54)(계속)
1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9)(계속)
1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1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1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장 의견제시)(계속)

1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1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발의)(계속)

13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1.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142.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143.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144.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김정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4항까지 144건의 국회 관계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보시면 기 합의 처리사항, 계속 논의사항, 논의 요망사항, 쟁점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 합의 처리사항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의결하여 처리된 14건의 사항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여 당해 항목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계속 논의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첫 번째 항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일 1차 회의 원칙의 명문화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선례로서 인정되어 온 내용인데 이것을 국회법에 명시하자는 이강래 대표님의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회한 경우라도 다시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건에 대한 소위 회부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은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따라서 의결절차를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결절차 없이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소위원회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회부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위원님들 중에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논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도록 규정하자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만 일부 위원님들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입니다.

행정입법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방안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현행은 행정입법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이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에서 행정입법을 미제출한 경우에 어떤 재량규정이라든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행정입법을 제출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행정입법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관계 장관의 소명 또는 출석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이의제기 시 결정주체입니다.

현행 국회법 117조에는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예를 살펴보면, 본회의 의결로 이렇게 결정을 한, 회의록 정정한 예는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의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입니다.

현행은 감사원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회계검사보고 및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결산검사 및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 결과 이외에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의견의 일치가 있어서 전체위원회에까지 회부가 됐지만 감사원이 이견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7항입니다. 허위의 서류제출 및 서류제출의 해태 등에 따른 제재입니다.

현행은 허위의 서류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국가기관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나 서류제출을 해태·거부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장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8항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행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이 인사청문대상인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법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겸직 금지입니다.

○손범규 위원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논의 요망 사항까지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소위원장 김정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가 됐다가 합의가 안 된 부분에 관한 것인데……

○우윤근 위원 이건 실무회의에 넘겨서 다시 보고……

○소위원장 김정훈 이것을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잘 합의가 안 돼. 이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 쪽 의견도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당에서 검토를 일차적으로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이것은 오케이다'든지 '오케이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하는 조건으로 오케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TF팀장이 같이…… TF팀장은 우리 원내대표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한나라당은 손범규 위원이 팀장을 맡고 민주당은 홍영표 위원이 맡아 가지고 각자 한번 조율을 해서 여기서 총체적으로 해야 성과가 나지……

○손범규 위원 그러면 TF팀장은 TF팀장끼리 만날 게 아니라 자기……

○소위원장 김정훈 그렇지. 자기 당에서 이것을 한번…… 각 당에서 팀을 짜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절충을 하자 이거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고 여기서 하니까 다 오케이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위원이 '이게 이상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합의가 안 돼.

○손범규 위원 그러면 자기 당에서 조정을 할 때 위원들하고 다 만나서 할 수는……

○소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각 당 TF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자기 당 입장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또는 '이것은

이만큼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받겠다'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한 다음에 팀장하고 한 번 하고, 팀장은 원내대표하고 같이 당 내 조율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총체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조율을 해서 이렇게……

○손범규 위원 나중에 와서 전체적으로 할 때 위원들이 다 왔을 때 그때 또……

○소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일단 조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윤근 위원 조율이 되면 그래도 논의가 적지. 그냥 안 하고 여기서만 하면……

○소위원장 김정훈 여기서 하면 첫째 이해를 잘 못 하니까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번에 해 보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의될 듯하다가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하고 합의가 어렵다는 이 말이지요. 이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를 원활히 이루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TF팀을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윤근 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죽 검토를 시켰지. 여러 명이 검토할 것은 아니지. 의사국장이랄지 실무국장, 의사국 사람은 규칙 절차를 의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죽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수용불가' '부분수용' 이렇게 죽 만들어라 해 가지고 의원 한 사람이 운영위원들한테 미리 돌리면 되지. 의원총회에 돌릴 것은 아니고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우리 쪽은 적어도 통일해서 나와야지.

○손범규 위원 수용불가, 수용가능……

○우윤근 위원 그렇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원들한테 미리 줘야지. 여기 와서 논의하면 시간만 많이 가고 합의를 잘 못 해, 한 사람이 이의 있고 그러면 잘 안 되니까.

수석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미리 한번 이렇게 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무진하고 죽 '수용불가' '부분수용'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소위원들한테만 우선 죽 줘 봐라, 의견을 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단하고도 의논해야 되겠지, 쟁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소위에 와서는 의결 수준에 거의 달한 정도로 와서 모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국회법은 한 사람만 노(NO)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처음부터 초벌구이 하면 능률이 안 올라요, 다른 법하고 달라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성해 본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이것을 먼저……

○소위원장 김정훈 초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팀장끼리 조율을 해 주세요.

○우윤근 위원 한나라당도 의사국장 있나?

○한나라당원내행정국운영팀장 장종진 의사국장이 아니고 행정국장입니다.

○우윤근 위원 의사 표시를 한번 이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한나라당원내행정국운영팀장 장종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것 만들었어요?

○한나라당원내행정국운영팀장 장종진 예, 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소위원장 김정훈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TF 팀장하고도 같이 한번 거르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야 성과가 나지……

○우윤근 위원 그래서 해서 그러면 오늘은 그 원칙을 정해서 내일 한번……

국장님들, 거기에 이 가안이 있지요?

○한나라당원내행정국운영팀장 장종진 예, 손범규 위원님한테 검토를 받고 다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그 가안은……

○우윤근 위원 그러면 내일이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 의사국장하고 행정국장이 오시면 되고, 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손범규 위원 내일이요?

○우윤근 위원 내일이나 모레 하든지 아니면 다음주에 하든지……

○소위원장 김정훈 이것 하려면 다음주에 해야지 뭐.

○우윤근 위원 다음주에 해야지, 이번 주말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손범규 위원 그 계속 논의 사항뿐만 아니라 뒤의 논의 요망사항까지 다 우리가 입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정훈 그렇지요.

○손범규 위원 그것을 당장 내일 어떻게 해요?

○우윤근 위원 이번 주는 안 되지. 다음주에나 해야지, 이것을 죽 검토하려면.

○손범규 위원 이번 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번 달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윤근 위원 그렇지, 다 하려면 이번 달에는

안 되지.

○손범규 위원 4월 달에나 되지 그러니까……

○우윤근 위원 그렇지, 이번 달에는 이것 너무 많아.

○소위원장 김정훈 오늘은 그러니까……

○우윤근 위원 그런 원칙을 정하고……

○소위원장 김정훈 그렇지.

○우윤근 위원 다음 달에나 해야 되지요. 4월 달에나 해야 되지요. 어차피 4월에……

○소위원장 김정훈 우리 이 소위 여는 것은 다음 달쯤에 하고 TF팀을 그러면 홍영표 위원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윤근 위원 그래요, 다음주에나 한번 만나서……

○소위원장 김정훈 우리 내부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하고……

○우윤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예.

○우윤근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논의가 합의가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다음에 의견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다시 또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김정훈 그렇지요.

○우윤근 위원 그럽시다.

○소위원장 김정훈 맞아요. 그것 그렇게 해야 성과가 있지.

○우윤근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소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가서 일 봐.

그래도 오늘 회의를 열었으니까 이것 그냥 스크린이나 한 번 하고 가지 뭐. 이것 죽 한 번 해보고……

○우윤근 위원 그러면 보고만 듣지, 준비되었으니까.

○소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계속하세요.

○우윤근 위원 논의 요망사항까지만 보고를 합시다.

그것이 몇 페이지지요?

○소위원장 김정훈 아니, 죽 해. 한 5시까지 하면 되잖아. 이것 금방 다 하잖아.

○우윤근 위원 4시에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가시고, 죽 그냥 해요.

○우윤근 위원 그래요. 이것은 의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까……

○소위원장 김정훈 그래요.

○우윤근 위원 나는 조금 있다가……

○소위원장 김정훈 그래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재철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인데 의원이 대학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 임기 중 휴직되도록 규정된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의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을 퇴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기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직업 간에 있어서 평등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합의에 이르지 못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청가 및 결석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범래 의원이 제출한 내용인데요. 의원의 회의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및 입법활동비도 감액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 사·보임 제한입니다. 현행은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에 개선이 될 수가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6개월 이내의 상임위원 사·보임을 제한하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보임을 허용하는 현행 단서 규정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논의가 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법률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법률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공보 등에 입법예고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의하려는 법률안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있고 또 현행 임의사항인 위원회의 법률안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입법이 긴급을 요하거나 입법 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생략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있으며, 위원회의 법률안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하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것은 이강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예산부수 법률안의 의결 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의장은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항입니다.

당일 회의 산회 시 심사기간의 기산입니다.

현행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 시 해당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산회하였을 때에 심사기간은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전체가 지난번 회의 때 국회법에 규정이 미비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뒤에 보면 계속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강래 의원안 p.856' '의장 의견제시 몇 페이지' 이것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워낙에 많아 가지고 여기다가……

○손범규 위원 여기 두꺼운 책의 페이지를……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예, 그래서 조문을 보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소위원장 김정훈 조문으로 돼 있는 것의 페이지 숫자다 이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한 150건 정도를 한꺼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소위원장 김정훈 내가 조문으로 보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워낙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건 표결 시 투표권자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

의사 안건의 표결 시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표결에 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본회의 개의 중 5분자유발언의 허가……

○소위원장 김정훈 투표권자임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비밀번호라든지……

○소위원장 김정훈 비밀번호?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미국 같은 데는 신용카드 같이 그것을 이렇게 하면 본인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확인이 되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밀번호 방법이 조금 유력하지 않느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든지 눈동자를 갖다가 대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다음은 9항입니다.

본회의 개의 중 5분자유발언의 허가입니다.

본회의 개의 중 5분자유발언의 허가를 현행은 의장께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의장이 단독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의장님이 법안 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국회행정제도개선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우윤근 위원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의견으로 왔던 내용입니다.

○우윤근 위원 여기 보니까 '의견제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법안이 나온…… 우리가 지금 법안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보통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개인 명의로 해서 법안을 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회운영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의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 형태로 운영위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할 때 그 의견을 좀 참조해서 심사……

○우윤근 위원 그러면 법안으로서는 유효한 것인가, 발의가?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당초부터 법안의 형태는 띠지 않고……

○우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여기에서 이것이 채택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우리 위원회안으로 할 때 들어갑니다.

○우윤근 위원 의장 의견제시로 해서, 이것은 못 보던 발의 형태이기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의장님에 관한 사항만 특수하게……

○우윤근 위원 자기 권한 확대하는 것을 그냥 의견제시로 이렇게 해 놓으면…… 황당하네, 보니까. 의장 단독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손범규 위원 의견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안이 다 되어 있구만요. 법안으로 다 나와 있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이것이 사실은 의장님 명의로 의견제시가 되었지만 이 안을 만든 것은 국회 내부에 행정제도개선연구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생겨서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우윤근 위원 하나만 예시하자면 교섭단체 협의로 하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의장이 혼자서 하겠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9항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계셔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정부질문 제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정부질문 횟수를 줄이는 내용, 두 번째 항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을 3월 임시회와 정기회 중에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정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간을 정기회 회기에는 5일 이내, 임시회 회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회기 중 5일 이내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안은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절차적인 규정을 약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논의된 적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대정부질문은 한번 바꿔 봐야 되겠더라고. 형태를 좀 바꾸어야 돼요.

○우윤근 위원 바꿀 필요는 있는데, 한나라당이 야당 되면 바꾸세요.

○소위원장 김정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 축약해서 하든지 해야지 보면 너무 그래요.

○우윤근 위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긴급현안질문시간을 총 120분으로 하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고,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제별 질문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긴급현안질문시간을 120분에서 360분으로 변경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시간 내에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자는 것과 의원의 질문시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경우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교섭단체별 총 질문시간

내에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질문의원 수와 질문의원별 질문시간을 정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질문의원과 의원별 질문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의견과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 제출 기한을 본회의 개의 24시간 이전에서 12시간 이전으로 단축하자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18대에 들어와서도 두 번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회'는 '본회의'를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 이외에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요구가 가능하도록 감사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김부겸 의원께서 제출한 결산의 심의 완료 기간을 설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결산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약간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결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14항이 되겠습니다.

사직 절차의 변경입니다.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국회의장 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항이 되겠습니다.

윤리심사 및 징계제도의 정비입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윤리심사와 징계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내용이 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국회는 그 의결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해서 현행 윤리심사 사유인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징계사유에 제147조의 규정을 위반한 폭행·폭언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또 징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의원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에서 해당 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 의원수당 등의 2분의 1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징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가 있는 경우 수당 등을 각각 해당 월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씩 감액하도록 하고, 출석정지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확대하자는 금전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구체화되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국회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시정,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을 요구하도록 구체화하는 안이 제출되었고요.

다음, 피감기관이 시정 등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출석 및 소명요구, 해임건의,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윤근 위원 보니까 여야, 의장 다 의견이 똑같으니까 이것은 합의될 것 같은데 오늘 합의 하나 해 볼까요. 이것은 여야, 의장 다…… 하나는 합의해야지. 어때요?

○소위원장 김정훈 정부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윤근 위원 여야, 국회의장 다 찬성하는데 위원장이 정부의견을 듣자고……

○소위원장 김정훈 여당이 잘 하자고 하면 좀……

○우윤근 위원 손 위원 생각은 어때? 여야, 의장 의견이 똑같이 다 일치해. 이것은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없고 의장님도 똑같은 견해 같은데. 권영진·이용섭 의원, 의장님 의견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손범규 위원 변상, 징계, 시정,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이렇게 다 나열하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하나 그게 그거예요.

○우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손범규 위원 지금 현재 '시정'이라는 말만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조정하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제도 개선하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모가지 자르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다 하는데요 뭐.

○우윤근 위원 두 번째는 응하지 않을 때 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하라는 것 아니에요?

수석님 의견은 어때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요구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을 꼭 들으려고……

○소위원장 김정훈 정부 입장도 있잖아.

○우윤근 위원 위원장은 가만히 사회만 보고 우리가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 의견은 그냥……

○소위원장 김정훈 진행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18페이지 17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입니다.

현행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행하는 위원회도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항은 허위의 서류 제출에 대한 처벌입니다.

현행은 서류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허위의 서류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자는 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자는 안,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자는 안이 있고, 그다음 국가기관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장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우선 고발 결과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관한 내용인데, 현행은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동법에 따른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수사 종결 후 최초로 집회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그 처분 사유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서면보고에서 법무부장관의 출석보고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존중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존중의무를 부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및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록 하자는 안과 공직후보자의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안, 그리고 고발 주체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예비조사입니다.

현행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예비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청문위원 보좌관이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은 국회 원구성 지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가 집회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내용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 선임될 때까지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는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쟁점적인 사항이 되겠다 싶어서 분류한 내용인데……

○소위원장 김정훈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예, 그다음에 23쪽은 상시국회 도입입니다.

현행은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는 기준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개정안에서는 상시국회 도입을 위하여 매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는 안과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1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임시회 집회에 필요한 요구서를 붙이도록 하여 임시회가 제때에 개회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두 번째는 상시국감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되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연간 상시국감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항이 되겠습니다.

매 짝수월에 임시회의 자동 개회입니다.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는 기준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국회법에다가 매 짝수월에 임시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총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 득표와 10인, 15인, 국회의원 총선거일 현재 상임위원회 수 등으로 현재보다 완화하자는 그런 안이 제출되었고, 무소속 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원내정당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안도 함께 제출돼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 기획재정부 소관 중 예산·결산·기금결산에 속하는 사항,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는 개정안과 예결특위를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었

습니다.

다음은 6항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소관 상임위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체계·자구에 대한 검토를 의뢰 요청하도록 하며 이 경우 법제실은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안의 상정 및 처리기간 설정입니다.

○손범규 위원 아까 26페이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못 하게 하면 법사위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체계·자구 외에 법사위 본연의 업무, 뭐 법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체계·자구만 법사위원회 업무에서 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범규 위원 체계·자구 심사하는 것 외에 하는 게 없는데 뭘 하지요?

○입법심의관 김승기 소관 기관이 법무부라든지 법제처……

○손범규 위원 소관 기관에 대한 법안은 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범규 위원 소관 기관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소위원장 김정훈 그게 아니고 법사위를 아마 상원화시키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경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로 넘겨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은 넘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인가?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의할 때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의 의견은 법사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눠 가지고 법제는 따로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소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안의 상정 및 처리기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안건 심사 및 처리의 장기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임위·법사위 체계 자구·본회의 상정 및 심사기한을 설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의원님들의 안을 표로 정렬해 놓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쪽입니다.

이것은 법률안 조정절차 및 필리버스터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의 내용조정을 위해 법률안조정위원회를 두어 협상절차를 거치거나 토론회수 및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안 그리고 조정절차는 어떻게 요구하느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다 또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도 가장 위에 있는 박상천 의원안만 보시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정의원 수, 각 교섭단체별 조정의원 및 대표 1명을 정하되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조정의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소속의 조정의원 수를 합한 의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안이 있고 그 외에 유사한 안들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손범규 위원 법률안 조정절차라는 것이 아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하는 것을 빼버렸다고 전제하고 이런 것을 만들자는 그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된 것이…… 예를 들어서 미디어법 같은 경우처럼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에 어떤 제한이 없이 계속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해서요.

○손범규 위원 법률안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본회의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이것은 의장님께서 교섭단체대표의원들하고 해 가지고 따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해서 내용을 조정하고 또 본회의에서는 어떤…… 여기에 보면 토론 횟수 및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같이 계속 토론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한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조정절차의 종료 요건이 있습니다. 박상천 의원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의원님의 안에 보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회의의……

○손범규 위원 3분의 2도 안 되고 5분의 3도 안 되고 해서 종료가 안 되면……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계속……

○손범규 위원 계속?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직권상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직권상정이 있다고 하면 이 절차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손범규 위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면서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직권상정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에서는 직권상정하고 엮어 가지고……

○입법조사관 최병권 안별로 조금 다릅니다. 권영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의 상정 및 처리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시한 내에는 조정절차를…… 토론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지만 처리시한이 지나면…… 예를 들면 상임위 처리시한 180일 빼고 180일이 지나면 바로 조정절차는 저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범규 위원 유정복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입법조사관 최병권 유정복 의원안도 기한이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없습니다. ‘상임위 처리시한 없음’ 유정복 의원안을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상임위 처리시한 없음 그리고 본회의 상정시한……

상임위에서의 처리시한이 없는데 그러면 유정복 의원안은 이 안하고 관계가 없나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위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심사하실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항하고 8항하고 의장님 직권상정에 관한 규정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손범규 위원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필요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1개월, 3개월 하는 것이거든요.

○손범규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손범규 위원 어떤 처리 기한을, 기본적인 로직이 처리기한을 다 둔 상태에서 무한 조정위원회를, 종착역은 정해져 있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 그런데 종료되는 시간이 되기 전에 5분의 3이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냥 거기서 빠져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소용돌이가 쳐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버리면 그냥 본회의로 간다 이거예요?

○입법조사관 최병권 예, 본회의로 가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박상천 의원안 같은 경우는 그런 시한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절차가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이 되어야지 종료가 되지…… 안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의원님들이 어떤 분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내시고 어떤 의원님은 저쪽에 주안점을 두고 내시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부분은 연결이 되고 어떤 부분은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자, 진행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다음 9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및 예결위 회의의 회의 장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결위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하는 이강래 의원님의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관한 사항도 처리 안건의 무효인데 이것도 이강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는 것이 이강래 의원님의 다른 안과 연관이 되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위배했을 때는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된 사항이라서 이것도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제도의 변경입니다.

현행은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현행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경우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72시간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자는 안과 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의 경우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규정,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법률안의 상정 시기 및 의결 기한을 설정함에 따라 본 조항을 권영진 의원안에 삭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법률안의 상정 시기 및 의결 기한을 설정함에 따라 법률안의 심사기일 지정은 폐지하되, 법률안이 아닌 안건에 대한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제도는 유지하고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주성영 의원안입니다.

이상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의 질서유지 관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당히 다양하게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첫째, 의원의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를 신설하자는 안,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와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안, 또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또는 제지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의 경우 발언 금지, 퇴장뿐 아니라 2회 경고에도 불응할 경우 출석정지의 징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있고, 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 은 이를 즉시 제지해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회의에서 퇴장시키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불응 시 의원을 체포하도록 규정하는 안, 의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장을 제외한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할 수 있게 하자는 안, 기타 내용은 유사한, 어떤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의장의 직무정지 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떤 질서유지와 관련해서 의장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 보면 의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직권으로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직무정지명령 1회는 1개월간, 2회는 3개월간, 3회는 본회의에서 당해 의원의 직무정지처분을 해제하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시 국정감사 및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인데 현행의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임시회 기간 중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자는 안과 상임위별로 임시회 기간 중에 25일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분할하여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그리고 상임위별로 정기회 기간이 아닌 월에 상시적으로 3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안과 국정감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자는 안 등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항 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입니다.

현행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국회 전체 차원의 국정조사 외에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제도를 신설하자는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다음, 36쪽은 국회의 질서유지 관련 법안입니다.

차명진 의원안과 이범래 의원안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특히 차명진 의원안에서는 의장의 경호권을 새로 규정을 하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의장의 조치 및 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의 제재를 현행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에 국회 폭력행위 방지 관련 법안의 내용도 폭행, 협박,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번 이렇게 스크린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양당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선진화 관련 법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회 선진화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국회에서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물리력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후진적인 국회로 낙인찍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물리적인 어떤 충돌, 폭력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좀 중점을 두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여야 간의 합의가, 야당의 합의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면 어떤 방법이,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 위원(3인)

김 정 훈　　손 범 규　　우 윤 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성 곤
입 법 심 의 관	김 승 기